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16시 11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	3

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

2014.04.17 조회수 552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84
담당부서	도시계획과
상위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
조례	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01-10-13
규제시행/폐지일	2001-10-13
규제내용	제36조(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7호의 공장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) 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(주차장을 제외한다) 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83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85 >

Yeosu Web Contents

